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총 포 · 도 검 · 화 약 류 등 의
안 전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5. 17. ~ 6.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별표 16의2 제4호의 보유기관란, 보유내용란 및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	정신질환으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치료 중인 사람으로서 입원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및 정신질환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자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
--------------	---	--

별표 16의2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대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8.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인한 의료급여 대상인 사람에 대한 자료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0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46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5. (생략) <u><신설></u>	제70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u>이사장</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생활질서과	
연 락 처	(02) 3150 - 1341